

••• 미국 •••

## 레이콤 미디어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연**방법무부는 Raycom Media, Inc.(이하 "Raycom")에 대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에 위치한 CBS 계열사인 WTVR-TV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Raycom이 지난 2008년 4월에 리치몬드에 있는 NBC 계열사인 WWBT-TV를 Lincoln Financial Media Company(이하 "Lincoln")로부터 사들인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연방법무부는 Raycom이 신고한 기업결합을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 4개의 지역방송국 중 2개를 Raycom이 소유하게 되어 지역방송 텔레비전 광고시장에서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은 Raycom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법무부는 화해안을 제시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연방법무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쟁 상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점금지국 부국장은 "매각은 리치몬드의 해당 시장에서 텔레비전 방송광고시간을 구매하는 광고주들에 있어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각 없이는 광고주들은 리치몬드의 지역방송국들에게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방법무부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Raycom이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TV 방송국들은 리치몬드에 있는 4개의 TV 방송국 중에서 광고수익 면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

이전에는 리치몬드의 지역방송국들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결합 이후, 이 방송국들이 지역시장에서 광고 수익의 50% 이상을 벌어들이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연방법무부는 리치몬드 지역에서 방송광고 경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Raycom과 Lincoln은 2008년 4월 1일에 기업결합을 완료하기 이전에 연방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소유지분 제한규제에 따라 리치몬드에 있는 두 개의 방송국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Raycom은 WTVR-TV를 Lincoln과의 기업결합이 완료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연방법무부에서 승인한 구매자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Raycom이 WTVR-TV를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연방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화해 안을 제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합의사항에 따라 연방법무부가 Rayco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Raycom은 매각할 방송국을 처분할 때까지 분리시킴으로써 리치몬드 지역의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Raycom은 알래스카 주 몽고메리 시에 분사를 두고 있으며, 18개 주 35개 시장에서 4개의 방송국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008년 8월 28일, 연방법무부)

●●●● 미국 ●●●●

## 호벤캠프 교수, 존 셔먼상 수상



**평**생 동안 경쟁정책 수립과 독점금지법의 집행에 기여한 허버트 호벤캠프(Herbert Hovenkamp) 아이오와대학 교수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7월 29일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으로부터 '존 셔먼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연방법무부 건물 케네디 홀에서 진행됐다. Thomas O. Barnett 독점금지국장은 "호벤캠프 교수는 오늘의 독점금지학문체계의 기준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도적인 독점금지 규범의 제정자들 중 한 명으로, 그의 통찰력과 설득력 있는 분석은 독점금지법과 정책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소비자후생 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했고, 그의 연구 업적들은 연방대법원과 전체 독점금지체계 및 실무계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학자에게 존 셔먼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호벤캠프 교수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미시간대학교, 텍사스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1986년부터 아이오와 대학에서 법과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독점금지과 경제, 미국 역사와 법, 불법행위, 부동산법 등을 강의해온 호벤캠프 교수는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이자 하버드대학교 록펠러재단의 펠로우(Fellow)이기도 하다.

그는 약 70여 편의 논문과 50여 편의 에세이를 비롯해 십여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1994년에 처음 제정된 존 셔먼상은 현재 독점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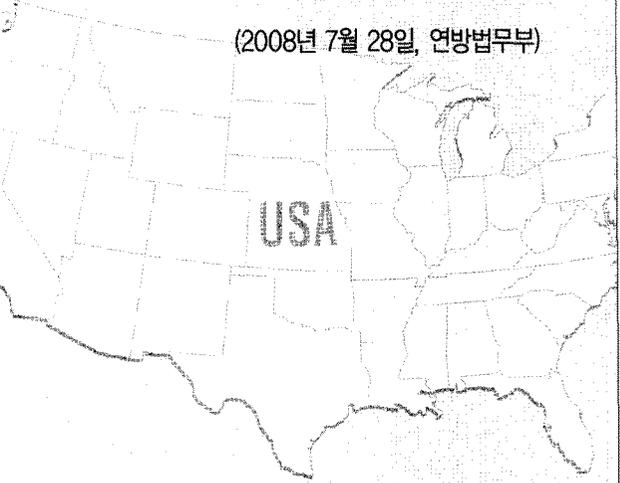
국이 독점금지법, 소비자보호 및 경제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뛰어난 업적을 이룬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존 셔먼상은 1890년 미국 내 최고이며 가장 영예로운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제정한 존 셔먼 의원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것이다.

존 셔먼은 의회의원이었으며 1877년부터 1881년에는 연방재무부 장관을, 그리고 1897년부터 1898년에는 국무장관으로 재직했었다.

역대 존 셔먼상 수상자로는 보크(Robert H. Bork, 2005), 포스너(Richard A. Posner, 2003), 핸들러(Milton Handler, 1998), 쿠퍼와 박스터(Thomas Kauper and William Baxte, 1996), 아리다(Phillip Areeda, 1995) 및 메첸바움(Senator Howard Metzenbaum) 등이 있다.

(2008년 7월 28일, 연방법무부)



## 보쉬와 삼성SDI의 조인트벤처 승인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 규칙에 따라 신고한 독일의 Robert Bosch GmbH(이하 “보쉬”)와 Samsung SDI Co. Ltd.(이하 “삼성SDI”) 간의 하이브리드 전기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시스템에 관한 조인트벤처를 승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을 검토한 후, 이번 거래가 유럽 역내 및 그 일부 지역에서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보쉬는 여러 가지 기술 제품들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공급업체이며, 특히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쉬와 삼성SDI는 하이브리드 전기 및 전기자동차에 이용되는 리튬이온기술에 기반을 둔 중형 및 대형의 에너지 저장장비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이 조인트벤처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보쉬와 삼성SDI는 자사만의 사업영역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결합함으로써 자동차산업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을 조인트벤처의 목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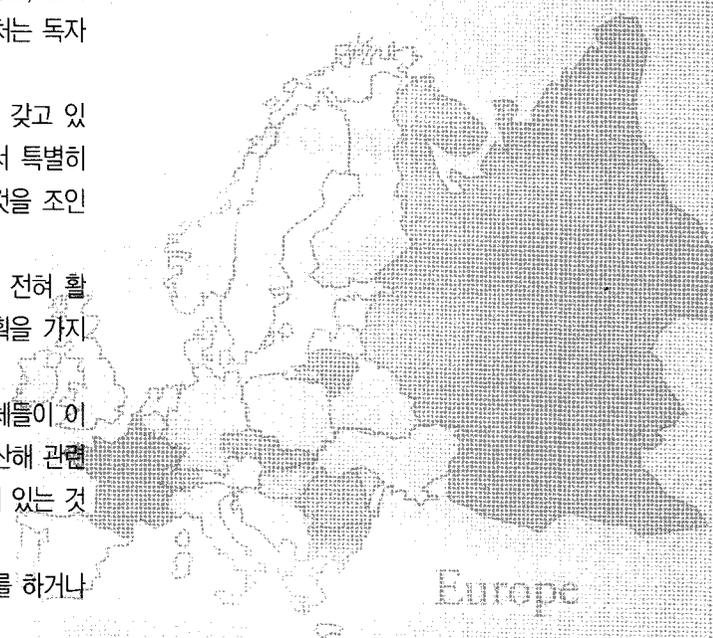
양사는 이번 조인트벤처를 통해 이제까지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련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 여타 경쟁업체들이 이미 활동 중이거나 현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 관련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인트벤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자동차산업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으로써, EU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2008년 8월 18일, EU위원회)



••••• E U •••••

## 지멘스와 오르너의 조인트벤처 승인



**E**U위원회는 오스트리아 기업인 Siemens Elin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GmbH & Co(이하 "B&I KG")를 독일 기업인 Siemens AG(이하 "Siemens")와 오스트리아 그룹인 Ortner가 공동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유럽 역내 및 그 일부 지역에서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Siemens의 단독지배를 받고 있는 B&I KG는 주로 빌딩서비스엔지니어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기획, 건축 및 빌딩 인프라의 리노베이션(Renovation), 전기설비, 소방, 보안경비, 냉·난방 및 위생시설 관리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B&I KG는 중부유럽 및 서부유럽의 몇몇 EU회원국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주요 지역시장은 오스트리아라고 할 수 있다.

Siemens는 에너지와 헬스케어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기회사이며, Ortner는 빌딩서비스엔지니어링과 민간·플랜트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Siemens가 단독으로 B&I KG를 지배해 오던 것을 Siemens와 Ortner가 공동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합시장 점유율이 작고 수평적 효과로 발생하는 경쟁상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위원회는 Siemens는 빌딩서비스시스템과 컴포넌트시장인 상류시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수직적 연관에 의한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Siemens는 이번 기업결합 이전에 Ortner와 빌딩서비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Siemens Bacon'이라는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직적으로 통합된 상태였다.

위원회는 또한 Ortner의 하류시장 점유율과 Siemens와 Ortner의 하류시장 결합점유율도 작다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은 시스템이나 컴포넌트시장에서 경쟁 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008년 7월 31일, EU위원회)



# 포르쉐의 폭스바겐 인수 승인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 규칙에 따라 신고한 독일 자동차회사인 포르쉐(Porsche)의 폭스바겐(Volkswagen) 인수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인수 건이 유럽 역내 및 그 일부 지역에서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포르쉐는 승용차 특히, 스포츠카와 SUV용 자동차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포르쉐홀딩스는 주로 도매와 소매 등 승용차 유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포르쉐는 포르쉐 브랜드를 가진 승용차의 유통 이외에도, 몇 년 전부터 여러 EU회원국들에서 폭스바겐 브랜드 자동차를 유통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회원국들 내에서 기타 제조업자의 브랜드를 부착한 자동차들을 도·소매시장에서 유통시키고 있기도 하다.

폭스바겐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승용차 및 상용차들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한편, 자동차 이외에 기타 자동차용 액세서리 등도 취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유통업도 운영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브랜드를 포함하여 아우디(Audi), 시트(Seat), 스코다(Skoda), 벤틀리(Bentley), 람보르기니(Lamborghini)를 비롯하여 부가티(Bugatti) 등의 브랜드도 소유하고 있다.

포르쉐와 폭스바겐은 여러 해 동안 상호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SUV용 차량의 개발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포르쉐는 이미 폭스바겐의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으며, 2008년 6월에는 포르쉐가 폭스바겐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서 4.92%의 의결권을 확보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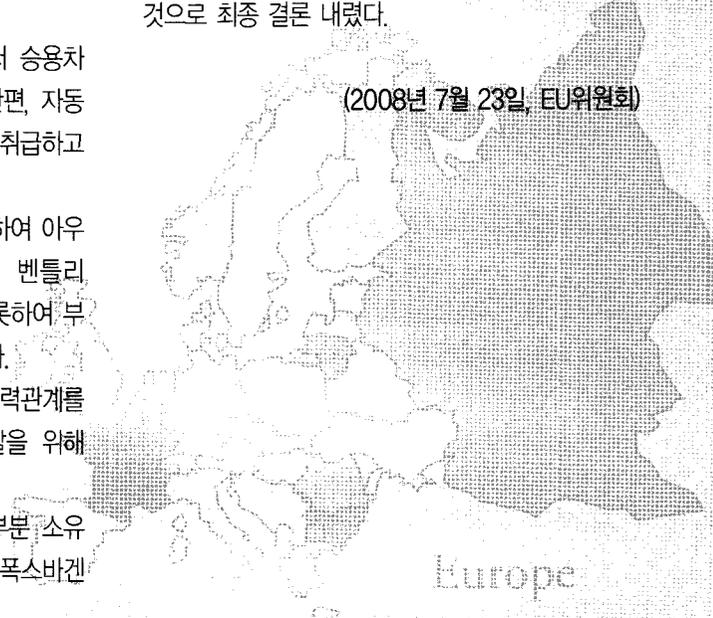
이번 거래를 통해 포르쉐가 사실상 폭스바겐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이 여러 종류의 승용차와 상용차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포르쉐는 주로 스포츠카와 SUV용 차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수평적으로 중복되는 시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포르쉐는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경쟁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위원회는 또한 이번 기업결합이 제조시장과 부품 공급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했지만, 이 역시 해당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2008년 7월 23일, EU위원회)



◆◆◆ 일본 ◆◆◆

## 텔레비전도쿄다이렉트와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 배제명령 실시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텔레비전도쿄다이렉트(이하 "텔레비전도쿄다이렉트")가 판매하는 '숙면★꿈자리'라는 베개(이하 "숙면꿈자리")와 관련되는 표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품 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우량오인)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배제명령을 실시했다.

텔레비전도쿄다이렉트는 숙면꿈자리를 일반소비자에 판매해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몇 개의 방송 프로그램과 자사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표시를 하면서, 마치 숙면꿈자리에 사용된 게르마늄 코팅 비즈로 인해 원적외선 효과 및 소취(消臭)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한 숙면꿈자리의 커버에 사용된 대나무 섬유에 의해 항균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표시를 했다. 그러나 실제 숙면꿈자리에는 게르마늄을 코팅한 비즈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2007년 4월 이후에는 대나무 섬유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일반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하고 우량한 것으로 표시했었다는 취지를 공시할 것.

둘째,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이를 임원 및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셋째, 향후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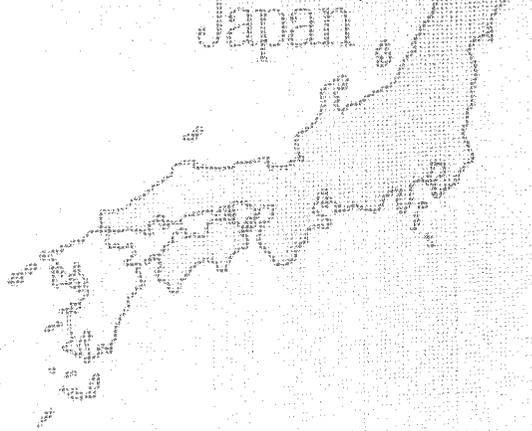
(2008년 8월 27일, 공정취인위원회)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판매하는 의류품과 관련되는 표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합회가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우량오인)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합회에 대해 배제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사건의 대상 상품이 된 의복제품은 '오리지널 하프 캐시미어 소매가 붙은 롱 카디건'이라는 카디건 등 9개 품목으로, 연합회는 이들 상품을 카탈로그 판매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연합회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9개 품목을 카탈로그에 기재하면서 9개 모든 품목의 원재료로 캐시미어를 50%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9개 품목 대부분에서 캐시미어 원료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 밝혀져, 공정취인위원회가 배제조치를 명령하게 된 것이다.

(2008년 7월 17일, 공정취인위원회)



●●● 일본 ●●●

# 항공사인 전일본공수에 배제명령 실시



**공**정취인위원회는 전일본공수 주식회사(이하 "전일본공수")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클래스'라는 전용 카운터 및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등의 공항 서비스 및 일반좌석보다 넓은 좌석 간격으로 설치된 고급 좌석 이용, 기내식 제공 등의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무(이하 "프리미엄 클래스")와 관련된 표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우량오인)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배제명령을 실시했다.

2008년 4월 1일부터 프리미엄 클래스를 일반소비자에 제공해온 전일본공수는 일간지에 게재한 프리미엄 클래스 광고를 통해, 좌석 머리 부분 양측을 개조해 근처 좌석의 탑승객으로부터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한 신형 좌석(이하 "신형 좌석")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와 함께 "ANA의 국내선 '프리미엄 클래스',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라고 기재하여, 마치 프리미엄 클래스를 이용하면 신형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부터 5월까지 신형 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종래부터 사용되고 있던 좌석을 그대로 제공했다.

또, 그 나머지 좌석에 대해서도 종래부터 사용되고 있던 좌석 간격을 변경해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이러한 표시가 일반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공시할 것.

둘째,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이를 임원 및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셋째, 향후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것.

(2008년 8월 25일, 공정취인위원회)



◆◆◆ 일본 ◆◆◆

## 동일본-서일본전신전화에 배제명령 실시



**공**정취인위원회는 동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이하 'NTT 동일본') 및 서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이하 'NTT 서일본') 등 2개사가 각각 제공하는 '빛전화'라는 IP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음성전화서비스(이하 "빛전화") 관련 표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해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2호(유리오인)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2개사에 대해 배제명령을 실시했다.

2개사는 빛전화를 일반소비자에 제공하면서 200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광고지, 우편광고, 신문 간지광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 B후렛트 이용료 또는 후렛트광프리미엄 이용료에 대한 표시부분에서, 빛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 NTT 동일본의 경우는 B후렛트 이용료, NTT 서일본의 경우는 후렛트광프리미엄 이용료(이하 이 둘 모두 "광케이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마치 통화료 이외에 월정기본료 및 빛전화 대응 라우터 이용료(NTT 동일본의 경우이며, 집합주택에서 이용할 경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이 표시했다.

B후렛트 이용료란 'B후렛트'라고 칭하는 광케이블 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말하며, 후렛트 광프리미엄 이용료란 '후렛트광프리미엄'이라는 광케이블 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말한다.

▲ 빛전화 대응 라우터 이용료에 대한 표시와 관련해 NTT 동일본의 경우는 집합주택에서 빛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빛전화 대응 라우터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마치 통화료 이외에 월정기본료 및 B후렛트 이용료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 전국 통화료가 동일하고 3분마다 8.4엔이라는 표시에서는, 빛전화의 통화료는 통화 상대방이 가입전화, ISDN 규격에 의한 전화 및 빛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해 해당 통화료가 전국마다 일률적이고 3분마다 8.4엔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마치 통화 상대방에 관계없이 해당 통화료가 전국 모두 동일하게 3분마다 8.4엔인 것처럼 표시했다.

▲ 빛전화 A에 포함되는 통화료 504엔 상당의 통화대상에 대한 표시를 하면서, 빛전화 A라는 요금플랜에 포함되는 통화료 504엔 상당 분을 통화할 수 있는 통화상대방은 가입전화, ISDN 및 빛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마치 해당 통화에 있어서 통화상대방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배제명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15일, 공정취인위원회)